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가장 많았던 질환은 asbestosis로서 312명이었고 asbestos에 의한 늑막질환이 127명, 소음성 난청이 132명, 기관지염을 포함한 상기도염증이 114명, 유기용제중독이 70명, 직업성천식이 67명, 기타 호흡기질환이 46명이었다. 이 환자들에 대한 노출에 대한 가능한 정보를 종합해 보건대 asbestos가 53%이었고 소음이 49%, 유기용제가 42%, 용접흄이 35%, 섬유유리가 11%, 진동이 9%, 납이 4%이었다.

피부질환과 일반외상은 후송되지 않고 현장의 전문의에 의해 치료되어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환으로서 납중독 등의 중금속중독, 규폐증, 독성물질에 의한 간질환, 정신질환 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광산지역에서의 타당성 있는 질병보고는 없으나 1969년 광산 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석탄광부의 진폐증과 규폐증이 광산지역에 풍토병처럼 남아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유는 광산의 작업 환경기준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과거에 노출된 근로자가 현재까지 계속 질환에 이환되거나, 최근의 강화된 건강검진제도로 환자발견이 늘어

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발생 자료는 가장 불충분하다. 살충제와 제조제 사용의 증가로 급성,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의료관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상의 자료들로 직업성 질환이 지역사회의 유병정도와 사망정도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전체 인구의 연구결과를 보아 직업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Haward대학에서 미국의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만성호흡기질환 역학연구의 결과에서 만성호흡기증상과 기능장애가 먼지와 흄, 가스 등의 직업적 노출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결과는 흡연과 일반 대기오염의 영향을 배제하고 분석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직업요인에 노출되는 인구가 미국 성인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직업요인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호흡기질환이 아니더라도 직업요인이 어떤 질환에 최소한 어느정도는 관련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보았을 때 직업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정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연탄 소속 근로자가 상병명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경골하 1/3부 및 좌측족관절 내각부”로 요양 중 개호를 신청한 경우

(87-174호 87.7.20. 기각)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성명 : 장 ○ ○

소속 : ○○탄좌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7.3.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호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연탄(주)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86.12.15. 10:30경 저탄장에서 하역작업을 위한 수신호를 하다가 화차에 부딪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상병명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경골하 1/3부 및 좌측족관절 내각부”로 서강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중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3 제3항 및 노동부 예규 제119호에 의거 개호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상병부위를 치료한 서강정형외과의원 담당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수상후 2회에 걸친 수술 및 상처부위의 종창 및 동통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자문의 소견도 “좌측 다리의 경골 및 좌측 족관절 수술 및 상처부위의 종창 및 동통 정도는 개호의 범위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은 목발 또는 의자차 등을 사용하여 화장실까지의 이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구나 도구에 의해서도 자력으로 배뇨 배변이 가능하리라 인정된다는 이유로 개호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다리 골절부상으로 대소변을 보호자없이 볼 수가 없는데도 개호불승인함은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개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87.6.5. 장○○)
2. 원처분청의견서(87.6.16.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판결정서(87.4.22. 송○○)
4. 초진소견서(86.12.15. 서강정형외과의원장)
5. 개호신청서(87.3.18. 장○○)
6. 자문의소견서(87. 김○○)
7.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이 86.12.15. 부상으로 인하여 서강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요양 중 개호신청한데 대하여 원처분청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 김정형외과 초진소견서(87.12.15)를 보면 상병명이 “개방성 분쇄골, 좌측 경골하 1/3부 및 좌측 족관절 내각부”로 상병부위가 좌측 하지의 경골과 족관절부로 좌측다리 이외에는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 개호신청서상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수상후 2회에 걸친 수술 및 상처부위의 종창 및 동통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수술한 부위와 상처부위 종창 및 동통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은 인정되나 좌측다리 이외의 상체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목발이나 의자차를 이용하여 화장실까지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세째 : 원처분청 자문의사 소견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좌골결 원위 1/3 및 내측과 골절이란 등얼골의 인접한 부위의 골절로 석고는 면측장하지 석고(또는 내고정시는 단하지 석고)로도

고정 가능한 것으로 양수와 우측하지가 건전하므로 타인의 도움없이 목발이나 의자차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인 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거동상태는 목발 또는 의자차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구나 도구에 의해 자력으로 배뇨 배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청이 노동부 예규 제 119호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 제 6조 제 1항 6호 단서에 의거 개호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한다.

퇴근시 갑자기 머리가 아프며 “본태성 고혈압”이 진단된 경우

(87-1 호 87.1.19.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북 문경군 문경읍 상리

성명 : 박 ○ ○

소속 : ○○광업소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11.1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광업소 소속 후산부 “박○○”(60)은 86.1.18. 병방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 동료 근로자의 부축을 받

은 재해로, 소속 사업장에 요양신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기존질병이란 이유로 요양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자 요양신청 증명을 거부해 86.3.26. 원처분청은 진정서에 의해 조사한 바 청구인은 81.11.1. ○○광업소(현재○○광업소로 변경) 재직 당시 정기건강진단서 고혈압 170/110으로 빈혈증 의심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82.9.20. 늑골골절을 당하여 덕수의원에서 진료시 170/110, 83.2.15. 비늑골절 당시 180/100, 덕수의원에서 86.1.21 ~ 1.27.까지 통원치료시 “본태성 악성고혈압”증으로 200/90, 175/90, 180/90, 180/90의 상태와 86.4.2. 180/100인 것으로 보아서 자문의 소견

상에도 86.1.18.의 재해는 청구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의 재해로 인정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고혈압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입사시 이상없이 입사되어 정상작업을 하였고 연속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점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업무수행중의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불승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명 “본태성 고혈압”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12.24. 박○○)
2. 원처분청 의견서(86.12.27.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
3. 요양신청서 사본(86.11.10. 박○○)
4. 요양불승인 결정 결의서(86.11.15.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
5. 소견서(86.3.29. 덕수의원장)
6. 건강진단 개인표(82.6.25. 박○○)
7. 문답서(86.4.3. 박○○, 성○○, 윤○○)
8. 진료차트(덕수의원장)

9.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건대,

첫째 :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치료과정을 보면 81.11.1.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86.1.18. 동 사업소에서 병방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 동료 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퇴근한 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문경읍 소재 덕수의원에 진단한 결과 “본태성 악성고혈압”으로 86.1.21.부터 1.25.까지 가료하였다가 86.11.10. 비로소 원처분청에 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질환이란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 청구인은 81.11.1. ○○광업소(현재 ○○광업소) 재직당시 정기건강진단시 고혈압(170/110)으로 빈혈증 의심판정을 받았고 82.9.20. 덕수의원에서 늑골골절 진료시 170/100, 83.2.15. 180/100, 86.1.21~1.25.까지 통원치료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90, 175/90, 180/90, 180/90, 180/90의 상태와 86.4.2. 180/100으로 이미 기존질병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6.1.18.의 재해는 청구인의 기존기초질환(본태성 악성고혈압)으로서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업무의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